

④ 재해발생 시 대응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한 경우 사상자에 한 긴급구조 조치, 추가 피해 방지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⑤ 대피훈련 실시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안전법상의 1종 시설물은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피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7. 제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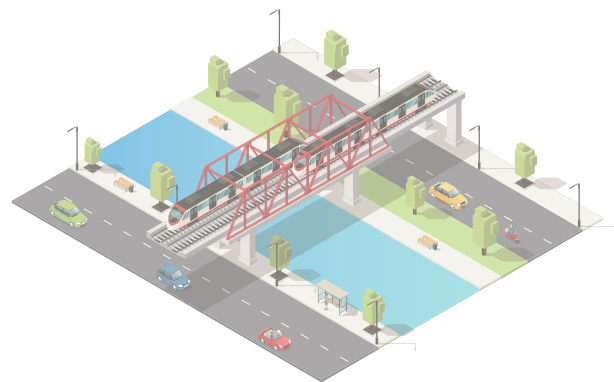
제 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해야 함

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조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조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또한 중대시민 재해 발생 상황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해야 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 현황-피해확산 현황, 현장 응급조치 현황, 대피 현황 등
- ③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정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10조)
※ 사고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법 제10조 및 제11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됨(제15조)

중대산업재해의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별 하면서,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음

- ▶근로자 2명·시민 9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2명 (중대산업재해는 부상자 2명 이상)
- ▶근로자 1명·시민 9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10명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하지 않음

3 경영책임자의 범위

☑ 책임의 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 제2조 제9호 가목)

* 통상적인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분류	공중이용시설 대표 예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건축법」상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오피스텔 제외) 「의료법」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등 토목시설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노래연습장, PC방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이에 준하는 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철도터널·철도교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 (20m 이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제외됨
※ 공중이용시설 세부대상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 분야별정보-재난/안전/중대재해 예방-중대재해 예방-자료실에서 확인

공중교통수단

분류	공중교통수단 세부대상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제외)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시외버스운송사업)
여객선	「해운법」 상 여객선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중 • 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항공기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5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법 부칙 제1조 제1항)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부터

6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에 따라 아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다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에 있는 경우에 한정 함)에도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확보·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것”

안전인력, 예산,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안전계획 표준안
① 시설개요 ② 안전인력 및 예산운영 ③ 안전점검 ④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⑤ 관계법령상 의무사항 및 의무 교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표준안
① 사고개요 ② 조사내용 ③ 사고원인 분석 및 결론 ④ 재발방지 대책 ⑤ 향후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등의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표준안
① 명령사항 확인 ②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③ 이행조치 실시 ④ 재발방지 대책
⑤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실시 점검 및 사후조치 의무를 부담”

점검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교육실시 점검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점검에 따른 조치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불이행 사실 발견 시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인력확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것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소관 시설물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 인력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안전계획 이행의 업무

안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 안전계획서 상의 의무사항 이행 인력을 확보하고 운용 해야 함

3)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022.1.24. 제정)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 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2. 예산확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예산은 ① 인건비, ② 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 안전 점검 비용, ④ 기타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음

2)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안전인력 인건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계획서 상의 의무사항 이행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함

3)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022.1.24. 제정)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 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3.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것

4. 안전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에 관한사항·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장비 확보 포함)에 관한 사항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

5. 이행사항 점검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못할 때는 지체없이 보고 받아야 함. 또한 점검 또는 보고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

6. 업무처리절차 마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재해발생 시 조치 등 업무처리절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중대 시민 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시행,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①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보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담함

②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공개적으로 마련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요인을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신고 또는 조치요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을 실시함. 만약 신고에 의한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유해·위험요인이 심각한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함